

아동수당 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위해
시행 되었습니다.



아동수당 확대계획

구분	일자	아동수당 대상
도입	2018.9.1.	만6세 미만의 일부 아동 (소득인정액 하위 90%이하)
보편지급	2019.1.1.	만6세 미만의 모든 아동 * '19.4월 시행(1월분부터 소급)
연령확대	2019.9.1.	만7세 미만의 모든 아동

2019년 달라지는 아동수당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하는 TIP!

- ①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가 신청**
* 부모가 아동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행방불명, 연락두절 등)
실제로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사람이 신청 가능
- ②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배우자의 금융조회동의서명, 전월세 계약서 등 불필요
- ③ 복지로 웹 사이트(PC) 또는 스마트폰 앱(APP)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간편**
*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 가능
- ④ 신생아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하여 지급
- ⑤ 2013.2.1. 이후 출생자로 2018년 신청했으나
소득인정액 초과로 지급제외 되었다면
담당공무원이 대신 직권신청 할 예정
(별도 신청 불필요)
* 원치 않으면 아동수당 직권신청 제외요청서를 작성 제출
- ⑥ '19년 1~3월에 신청하는 경우(직권신청 포함),
'19년 4.25에 1~3월분 아동수당을 소급 지급
* '19.2월 이후 출생아는 출생월부터 소급지급
- ⑦ 아동수당 미신청자는 반드시 신청해야 지급

문 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개별 읍·면·동 주민센터

복 지 로 | www.bokjiro.go.kr
홈페이지 | www.ihappy.or.kr

'아이'라는
이름의 미래,
아동수당이
함께 합니다



'아이'라는 이름의 미래

2019 아동수당
만6세 미만 모든 아동들과
함께 합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아동수당 안내

아동수당 신청 안내

아동수당 대상자

▶ 연령 : 만6세 미만(0~71개월) 모든 아동

* 2019. 9월부터 만7세 미만으로 확대

아동수당 지급

▶ 지급액 :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

▶ 지급일 : 매월 25일

*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 정기적금·청약통장은 아동수당 계좌로 사용 불가

아동수당 지급 정지

▶ 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재입국시 입국한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



2019년 아동수당 신청

“소득재산 조사를 하지 않아 간편해졌습니다.”

① 만6세 미만의 '18년 아동수당 지급 제외자'

- ▶ 별도 신청 없이 담당공무원이 아동수당을 대신 신청
- ▶ 신청을 원치 않으면 「직권신청 제외요청서」를 제출 가능 ('19년 3월말까지)
 - *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제출하거나 핸드폰 촬영 문서를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
- ▶ 2019년 4월에 1~3월분 소급하여 한번에 지급

② 만6세 미만의 아동수당 미신청자

- ▶ 아동의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방문이나 온라인으로(복지로 사이트나 앱 사용) 신청
- ▶ 아동수당 신청서만 제출하면 신청 완료
- ▶ 2019년 3월말까지 신청하면 4월에 1~3월분 소급하여 한번에 지급

③ 법 공포일 이전 60일 이내 출생자

- ▶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전에 신청하신 경우 출생월분부터 아동수당을 소급 지급받을 수 있음

아동수당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신청인 : 보호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의 친족 등)
- 신청장소 :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 보호자가 아동의 부모인 경우만 가능
-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이용
- 스마트폰 '복지로' 앱(APP) 이용

아동수당 신청서류

▶ 아동수당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 * 대리 신청 시 위임장(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보호자 신분증(사본), 신청인 신분증 필요

2019년 신청 유의사항

① 아직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분은 '19. 3월말 까지 신청 필요

* 단, '18.11~12월 출생아는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18.11~12월분 수당 지급 가능

② '18년 소득인정액 초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되신 분은 공무원이 대신 신청해 드릴 예정이므로 재신청 불필요

③ 개정된 아동수당법이 시행되는 4월에 1월분부터 소급하여 혜택